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·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국토교통부령 제769호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0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 인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제3호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”로 한다.

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지하여야”를 “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”로 한다.

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8호부터 제20호까지”를 “제19호부터 제21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8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

별표 5의8 제1호가목(2) 중 “별표5의3, 별표5의5”를 “별표 5의3, 별표 5의6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1호나목(5)을 (4)로 하며, 같은 목에 (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5)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계통의 화재를 감지 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강제로 환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
별표 5의8 제2호 부식의 일반부식의 검사기준란 중 “15% 미만일 것”을 “15% 미만이고 부식의 넓이가 용기면적의 25% 미만 일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연료장치란 다음에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	고압차단밸브 및 수소가스 용기밸브, 수소가스 누출감지센서, 용기센서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	밸브 및 센서의 작동상태를 전자장치진 단기로 확인
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12 제1호나목(2)(다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평을 유지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레일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별표 12 제1호다목(2)(가)3 중 “가로·세로”를 “답판(이동식 검사장비인 답판은 제외한다)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(2)(나)3 중 “롤러(롤러구동형은 제외한다)”를 “롤러”로 하며, 같은 3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롤러구동형 롤러 및 이동식 검사장비인 롤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별표 12 제1호바목(2)(나) 중 “순차적으로 연속된 데이터”를 “순차적으로 연속된 데이터 또는 판정기준값 초과 여부”로, “LED바”를 “LED, 점멸등”으로 한다.

별표 15 제2호가목(16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6) 창유리	가)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	유리(접합·안전)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
	나)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	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

별표 15 제2호나목(16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6) 창유리	가)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	유리(접합·안전)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
	나)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	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

별표 15 제3호나목 중 “내압용기 중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”를 “내압용기(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는 제외한다)를 설치하거나”로 한다.

별표 16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머.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

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 · 기구의 절연저항시험기란 다음에 검사용 기계 · 기구의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	1대 이상
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26 제2호의 제한되는 작업 범위란 중 “LPG 가스용기 및 용기”를 “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”로 한다.

별지 제34호의10서식 중 “처리기간 즉시”를 “처리기간 3일”로 한다.



별지 제34호의12서식 중 “ ”를 “ ”로 한다.

별지 제34호의14서식 중 “교통안전공단”을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0조, 별표 5의8 제1호나목(4) 및 (5)의 개정규정, 같은 표 제2호의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의 개정규정, 별표 15 제2호가목(16) 및 같은 호 나목(16)의 개정규정, 별표 16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가스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5의8 제1호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내압용기재검사부터 적용한다.

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.

③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점검·정비 및 튜닝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내압용기를 검사할 때 초음파 탐상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수소내압용기의 내부까지 검사하도록 하고, 수소 내압용기의 튜닝검사를 할 때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며,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·정비를 추가하는 한편,

수소가스누출감지기는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가스 누출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나타내는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텡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투과율을 자동차 검사기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

# 고 시

## 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-585호

전파법 제9조(주파수분배)에 따라 「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-87호, 2019.10.18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

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주파수분배표의 5350~5850MHz, 5850~7550MHz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37E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5350-5850 MHz

국 제		
(1)	(2)	(3)
제 1 지역	제 2 지역	제 3 지역
<b>5725-5830</b>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무선탐지 아마추어  5.150 5.451 5.453 5.455	<b>5725-5830</b> 무선탐지 아마추어  5.150 5.453 5.455	
<b>5830-5850</b>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(우주대지구)  5.150 5.451 5.453 5.455	<b>5830-5850</b> 무선탐지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(우주대지구)  5.150 5.453 5.455	

한 국	
(4)	(5)
주파수대별 분배	용 도 등
<b>5725-5850</b> 고정 무선탐지 이동  5.150 5.453	특정소출력(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) K37F 물체감지센서용 K40A 특정소출력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) K37E

### 5850-7550MHz

국 제		
(1)	(2)	(3)
제 1 지역	제 2 지역	제 3 지역
<b>5925-6700</b>	고정 5.457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5.457A 5.457B 이동 5.457C  5.149 5.440 5.458	
<b>6700-7075</b>	고정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(우주대지구) 5.441 이동  5.458 5.458A 5.458B	
<b>7075-7145</b>	고정 이동  5.458 5.459	
<b>7145-7190</b>	고정 이동 우주연구(심우주)(지구대우주)  5.458 5.459	

한 국	
(4)	(5)
주파수대별 분배	용 도 등
<b>5925-6700</b> 고정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5.457A 이동  5.440	고정M/W중계 K151A 방송중계 K151 UWB용 K125B 특정소출력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) K37E
<b>6700-7075</b> 고정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(우주대지구) 5.441  5.458B	방송중계 K151 고정M/W중계 K151A UWB용 K125B 특정소출력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) K37E K151D
<b>7075-7190</b> 고정 이동	방송중계 K151 고정M/W중계 K151A UWB용 K125B 특정소출력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) K37E  K151D

K37E(개정)

5150~5350MHz, 5470~5850MHz 및 5925~7125MHz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(WAS))로 사용하며 관련 ITU-R 권고에 따른 주파수 공유기술을 적용한다.